

## 제 9 회

## 전국관종별 도서관대회에서 채택된

## 전 의 사 항

1970년 5월 14일부터 제9회 전국 도서관대회가 관종별로 4개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난 6월 13일 학교 도서관대회를 끝으로 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습니다.

동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도서관인은 도서관이 국가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 보다도 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적이고 착실한 도구이며, 국가의 정보자원체라는 의견을 재확인하고 오늘 날 전국의 근대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자원체로서의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겸토 협의한 바 다음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관계 요로에 적극적인 조처와 협조가 요망되는 다음의 사항을 견의하오니 적절한 조처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1. 도서관법의 개정 요망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된 것이 1963년 10월 28일로서 이미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7년전에 우리는 도서관사업의 개척과 기초작업을 위해서 모법(母法)으로서 요구되었던 동법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가운데 도서관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으로서 보완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동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안할 예정임).

## 2. 사서직에 대한 체우개선 요망

사서직은 도서관 자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인 연구 분석으로 문헌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따라 광범위한 지식을 겸비하여야 만 봉사에 충실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전문적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자격증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바 전문직과 연구직으로서 또는 서고의 비워생적인 환경에서 무리하게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하여야 하는 직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타 직종과 같이 당연히 직무수당, 연구수당 또는 보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며 이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지급하는 바와 같이 사서직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공립의 공공·대학·학교·특수도서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관계 당국에 바라오며 사립의 공공·대학·학교 특수도서관 사서직에게도 국립 공립에 준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3. 도서관 시설기준 제정요망

현행의 대학설치기준령에는 도서관 관계 조항에 장서수만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의 각 기능별 시설의 평수가 표시되어 있지 못하고, 장수만의 규정으로는 합리적인 시설을 갖출 수가 없으며 도서자료 또한 기준 도달만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과 무관한 잡서(雜書)를 수집하는 폐단이 있어서 국가 경제를 낭비하고 있으니 대학과 학교 도서관의 설치기준령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전국 대학의 교양학부 과정에 도서관학 강좌 설치 요망

대학 교육이 연구·조사활동을 기간으로 삼는 것인 만큼 대학생들이 인류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각종 도서관 자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도서 및 도서관 이용방법이 미숙하여 그것을 이용한 자학자습의 습관을 기르지 못하고 교수의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예와 같이 전국 각대학에 도서관학 강좌를 교양과목으로 설치하여 교육하므로서 대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는 지식을 터득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5. 사서직 T.O의 증배 요망

도서관은 교육장으로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및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도

서관인의 역할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문현정보의 제공을 주업무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도서관은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할 사서직의 수적 부족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도서관이나 시민의 학교인 공공도서관, 제2세 교육을 담당한 학교도서관, 군기관, 은행, 국영기업체,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도 같은 입장에 있으나 관계 당국과 기관장에게 사서직 TO를 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6. 보존도서관의 설치 요망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현명한 문화유산의 보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존 전승(傳承)시키는 일은 반드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수많은 천재지변과 변란의 혼란에서도 도처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여 우리의 정신적 유산(書冊)들을 보존하여 우리들에게 계승(繼承)케 함으로써 수천년 전의 문화유산을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날에 와서도 이 일은 우리에게 절실히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문화유산의 다양화와 폭주, 그리고 소멸(消滅)되어 가는 귀중한 자료들의 계속적인 보존과 후손에게 전승시키는 사업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관계 당국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국내 각 지역을 감안하여 전국 20여개 지역에 보존도서관을 지정하여 각종 간행물이 빠짐없이 수집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7. 학교도서관 장학체계 확립 요망

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학교도서관을 지도 육성하며 도서관자료를 합리적으로 활용케 하므로써 학교교육 발전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을 통한 자율학습과 이용지도를 체계화 하여 학교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학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문교부 및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장학관과 장학사를 임명하여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도서구입비 증액 요망

각급 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의 부족으로 새로운 도서구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학과 학교에서 받고 있는 자율경비 가운데 도서비의 비율을 대폭 증폭시켜 주시기 바라오며, 운영비가 염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가 대폭 증액되어 신간도서와 외국의 자료가 빠짐없이 수집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 9. 외국 학술잡지의 신속한 구입방안 촉구

외국 학술잡지의 구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그 구입기간이 매우 지연되는 실정이므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아래의 문제가 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a) 유네스코에서는 쿠폰 배정을 월 2회 이상 배정하여 줄 것.

b) 쿠폰의 간접배정에 있어서 쿠폰 매입후 4개월이 지나도 신청도서가 입수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에서는 이와 같은 불신 대행기관을 대행업의 취소 등 단호한 감독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소식

송 창 남	(전) 장계중학교 교장 (현) 정읍농업고등학교 교장
해양대학교 도서관장	(전) 김 상 를 (현) 박 배 영
	(6월 5일부)
오 용 근	(전) 한양대학교도서관 열람계장 (현) 한양대학교도서관 열람과장
	(6월 1일부)

